

제 호			
<b>도로점용 허가증</b>			
주소 (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		
성명 (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	
생년월일 (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)			
도로의 종류	노선명		
점용의 장소			
점용 면적			
점용기간	년 월	년부터 월까지	( 개월 일간)
허가조건			
<p>「도로법」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도로관리청</b> 직인</p>			
<p><b>&lt;안 내&gt;</b>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는 「도로법」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·양수일 또는 분할·합병일로부터 2개월 내에 권리·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,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/p>			